

WTO 기본통신협상

우리나라 양허내용 및 정부대책

정보통신부

I. WTO기본통신협상 개요

- '94.5.7~'97.2.15까지 총 23 회 WTO 기본통신협상 개최
- '96.4.30 협상종료 예정이었으나, 당일 미국이 각국의 양허수준 부족을 이유로 협상타결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시한 연장

□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 '94. 4. '93.12 UR 각료 결정에 따라 기본통신협상그룹 설치
- '94.5~'96.4 14차례 기본통신 협상(NGBT) 개최
- '95.7 미국이 최초양허 계획서 제출
- '95.10 EU가 최초 양허

본고는 지난 3월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개최한 WTO기본통신협상 결과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재한 것임.

- '95.10 계획서 제출 Reference Paper
- '95.11 논의 본격화 한국이 최초양허
- '95.12 계획서 제출('96. 4 부분수정)

□ 기본통신그룹(GBT : Group on Basic Telecom)

- '96.7~'97.2 9차례 기본통신 협상(GBT) 개최
- '96.12 미국이 국제정산 Benchmark 제안
- '97.2 WTO 기본통신 협상 최종 타결

□ 협상범위

- 유선전화와 무선통신을 포함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 서비스 제공방식에는 설비보유 방식과 회선임차방식을 포함

□ 양허안 제출국

- 130개 WTO회원국 가운데 55개국(69개 정부)이 최종적으로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전세계 기본통신 서비스시장 ('96년 기준 약 6,000억불)의 약 90% 이상이 개방됨

II. WTO 기본통신협상 추진 경위

- 기본통신협상의 태동(UR기간 : '86.9~'93.12)
 - '90.12 미국이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MFN 의무면제를 주장
 - '92.2 미국이 12개 통신선진국에 시외/국제서비스 개방협상을 요구
 - '92.5 스웨덴이 협상대상 및 협상참여국 확대를 제안
 - '93.12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UR 각료결정 : 기본통

- 신 협 상 그룹(NGBT) 을 설치하여 '94년 5 월중 1차회의를 개최
 - '94.5 하고 96년 4월 30일 까지 협상을 종료 제1차 NGBT 회의 개최
-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 각국 양허안 제출
 - '95.7월부터 각국이 양허안을 제출하기 시작
 - '95.10월 EU의 양허안 제출 이후 협상 가속화
 - 우리나라도 동년 12월 최초양 허안을 제출
 - Reference Paper의 규제원칙 논의
 - 각국 시장진입 약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에 관한 추가양허가 필요하다는 각국의 공통인식에 따라 '95.1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 주요내용은 상호접속의 비차별 성, 공정경쟁보장장치, 보편적 서비스 의무, 허가기준의 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회소 자원 이용 등
 - 논의과정에서 상호접속 의무부 과 대상사업자의 범위, 허가절차, 국제정산료 공개 등이 문제되었으나, '96.4월 미국의 국제정산료 공개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합의
- 미국의 협상연기 선언
 - '96.4월 각국의 양허안 제출 및 개선으로 4.30일 협상시한까지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낙관되었으나, 협상최종일 미국이 각국의 국제서비스와 위성서비스 양허수준(Critical Mass) 부족을 이유로 협상타결을 거부
 - '96.4.30일 14차 다자간회의에서 협상시한이 '97.2.15일로 조정되고 기본통신협상그룹(GBT)으로 대체
- 기본통신그룹(GBT)
- 아시아국가간 비공식회의 (Asian Caucus)추진
 - '96.9월부터 한국의 주도하에 12개 아시아국가간 협상관련 의견교환 및 양허개선 협력을 위해 비공식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요 4개국(Quad) 회의
 - '96.9월 미국, EU는 12월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참가국들의 양허수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1월초까지 양허개선에 합의
 - 고위급회의('96.11월)
 - 미국은 국제서비스시장에서 공정경쟁 보장방안으로 상호주의에 기초한 사전 면허심사제를 철회하고 MFN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
- EU는 스페인의 초기 자유화('98.11월), 프랑스의 무선부문 100% 간접투자 허용, 벨기에의 사업자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정양허안을 제출
 - 싱가폴 WTO 각료회의 ('96.12.9~12.13)
 - 각국 통상장관들이 시한내에 협상타결을 촉구
 - 제5차 GBT('97.1월)
 - 미국이 국제정산 Benchmark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협상참가국들이 MFN 불일치 가능성을 지적
 - 주파수제약에 따른 사업자수 제한을 양허표에서 삭제하는데 대해 공통적인 이해도출
 - 최종 GBT('97.1.30~2.15)
 - WTO 기본통신협상 성공적 타결
 - 미국은 DTH, DBS, 디지털 위성라디오방송 등 일방향 위성방송서비스에 대해 MFN 의무면제를 신청

III. WTO 기본통신 협상의 주요쟁점

- Critical Mass
- 미국이 사용하기 시작한 Critical Mass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미국의 협상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협상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는 협상타결을 위해 필수적인 양허계획서 제출국 수 및 양허수준을 의미

- GBT 초기에는 기본통신시장 성장전망이 밝은 국가들의 양 허안 제출여부에 중점
- 싱가폴 WTO 각료회의시부터는 ‘외국인이 통신망을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양허수준’으로 의미를 구체화

□ 국제서비스

- 미국은 국제서비스 시장진입 관련 사전적 면허심사제(ECO Test : Effective Competitive Opportunity Test)를 주장
- 이에 대해 협상참가국들은 국제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보장장치는 MFN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
- ’96.12월 미국은 국제서비스시장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대신 국제정산료에 대한 Benchmark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나, 금번 협상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향후 ITU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

□ 위성서비스

- 미국은 위성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양허수준이 부족하고 양

허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

- 또한 정부간 위성기구(ISO : Inter-Governmental Satellite Organization)의 법적 지원 문제를 제기

- 미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논의한 결과 양허계획서에 전송수단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위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송수단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
- 정부간 위성기구 등 기타 위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뚜렷한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함
-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 삭제

- 제5차 GBT협상(’97.1월)에서 미국은 각국이 시장진입 제한사항으로 기재한 ‘주파수제약에 의한 사업자수 제한’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가장 된 무역장벽(Disguised Barriers of Trade)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통제한을 양허표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

- 이에 대해서는 GBT 의장노트를 통해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기술적인 사업자수 제한과 각국 고유의 주파수부분 정책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조와 추가 양허된 규제제도에 관한 일반

원칙(Reference Paper)의 관련조항에 의한 규제로 충분하다는 공통인식 하에 통제한의 삭제를 권고

IV.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 준비과정

- ’95.4월 협상전담조직으로 WTO 기본통신 협상대책단 설치
- ’95.7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수립
-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 하에 전면적인 국내 및 국제 경쟁체제 구축

- ’95.7월~12월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에 따른 단계적 양허계획 및 협상전략 수립
-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의견 수렴

□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구 내용

- ’98년부터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 ’98년부터 음성재판매 완전 자유화
- 국경간공급 방식에 대한 제한 철폐
- 최종양허내용

- 서비스 제공방식 : 설비보유방식 및 재판매방식(회선임차)을 포함
 - 신호 전송방식 : 유선망, 무선망, 위성망 등 모든 전송수단을 포함
 - 양허대상 서비스 : 12종
 - 음성전화서비스(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
 -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 텔레스서비스, 전신서비스, 팩시밀리서비스
 - 전용회선서비스
 - 디지털 셀룰라서비스(아날로그 셀룰라서비스 제외)
 - 무선호출서비스, PCS, TRS, 무선데이터서비스
 -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분야
 - '99년부터 49%, 2001년부터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
 - 일부 고수익구간에서만 크림스키밍이 가능
- V. 국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1.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
 - 공중망과의 접속에 의한 음성재판매사업
 - 설비보유 사업
 - 설비보유 사업에 비해 설비
 - '99년부터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
 - 2001년부터는 단독진출 예상
 - WTO 양허에 따라 현재 외

〈현행제도와 최종양허내용 비교〉

구 분		현 형	최 종 양 허 안
외국인 지분소유		유선 : 금지, 무선 : 33% 동일인 제한 유선 : 10% 무선 : 33%, KT : 1%	'98년부터 유·무선 33% 허용(KT : 20%) '2001년부터 유·무선 49% 허용(KT : 33%) 동일인 제한 : 좌동(단, KT : 3%)
외국인 대주주		금지	'99년부터 허용(KT 금지)
외국인 대표자 및 외국인 임원		외국인 대표자 금지 및 임원수 1/3초과 금지	'98년부터 외국인 대표자 허용 및 임원수 제한 폐지
재판매 서비스	공중망접속 음성재판매	금지	'99년부터 허용(단, 외국인 지분참여 49%로 제한) '2001년부터 외국인 지분참여 100% 허용
	이외 모든 재판매	제한 없음	'98년부터 100% 허용
사업자수		정부사전공고 방식	주파수 제약에 의하여서만 제한가능
국경간공급		제한가능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체결하에 허용 '2000.12.31일까지 국내에 회사설립 없이는 공중망접속 음성재판매서비스 공급 불가
규제원칙		국내 규제원칙 적용	Reference Paper의 규제원칙 양허
일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 DTH /DBS 등 위성TV방송, 디지털 위성 라디오방송		제한가능	양허대상에서 제외

- 국인투자가 33%까지 허용되고 있는 무선분야와 같이 유선분야에도 '98년부터 외국인투자가 33%까지 허용되며 2001년부터 유·무선분야 외국인투자가 49%로 확대
-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불가능하고 지분참여만이 가능
 - 유선통신분야의 경우 무선통신분야보다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시장자체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있고 동일인지분소유가 10%로 제한되어
 - 외국인의 진입전망이 높지는 않으나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시장의 경우 일부 진입가능성도 있음
 - 무선통신분야의 경우 유선보다는 설비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가 33%로 높게 되어 있어
 - PCS, TRS, 무선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분야에서 합작·제휴를 통해 진출할 것으로 예상
- ##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양상 변화
-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국사업자들이 조만간 국내통신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향후 국내시장은 국내사업자들 간의 경쟁은 물론 외국사업자들과도 서비스의 질과 요금면에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기존사업자의 수익기반 약화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간 M&A 활성화 전망
- 장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 VI. 정부대책
1. 정보통신관련 법령·제도 장비]
 - 많은 사업자의 출현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국내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보장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
 3. 국내 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
 - 세계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9개국이 '98년부터 통신시장의 개방계획을 제출
 - 우리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남아 시장이 상당 수준 개방될 계획이므로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속화
 - 최근 우리기업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남미시장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5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므로 우리기업의 시장진입 여지가 대폭 확대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100%로 시장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에 대한 장벽이 전면 철폐
 2. 정보통신 규제완화 추진
 - 주요내용
 - 대상법령 :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관련법령 전반
 - 주요 검토내용 : WTO 협상결과 수용
 - 지분제한 완화, 사업자 분류체계, 지배구조개편 등 검토

○ 요금규제 자율화('97.3)	년부터 단계적 국제경쟁 확대	토 추진
- 「인가원칙 신고예외」에서 「신고원칙 인가예외」로 전환 ('96.12.)	나. '97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원활한 추진	○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 및 경영효율화 차원의 기존사업 분할도 허용 검토
- 인가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97.3.5.)	다. 신규서비스 정책 방향 정립	
○ 통신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파규제 완화('97. 4.)	○ 위성휴대통신 등 정책 방향 결정	마. 공정경쟁 강화
- 지구국, M/W무선국, 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전파사용료 인하 추진	- 위성휴대통신(GMPCS)은 국제적 논의, 외국동향을 감안하여 '97년중 허가방침 결정	○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공정경쟁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3. 국내통신시장 경쟁 확대 및 공정경쟁 확보	-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은 국제동향, 기술개발 추이를 주시하여 '98년 이후 결정	- 통신사업의 경쟁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마련
가. 기본방향	○ 음성재판매의 조기 국내허용으로 대외개방전 경쟁체제 구축	○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문화
○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국내사업자는 '98년부터 허용 ※ 인터넷전화, 국제콜백서비스 포함	4. 한국통신 경쟁력 강화
- '97년까지 시내전화 경쟁도입 등을 통해 국내 경쟁체제 구축 마무리	- 외국사업자는 '99년 지분참여 허용(49%), 2001년 완전자유화	가. 추진방향
- WTO 협상결과를 반영, '98	라. 통신사업의 인수·합병 허용검	
〈허가대상 역무 및 사업자수〉		
허가대상역무	사업구역(사업자 수)	기존 사업자
시내전화	전국(1)	한국통신
시외전화	전국(1)	한국통신, 데이콤
주파수공용통신	대전·충남권(1), 충북권(1), 전북권(1), 강원권(1)	한국TRS, 아남텔레콤, 지역사업자(5)
무선호출	부산·경남권(1)	한국이동통신, 지역사업자(11)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해저광케이블 및 위성회선사업 포함)	희망지역(신청법인중 적격 법인에 허가)	한국통신, 데이콤, 두루넷, 지앤지텔레콤

-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 국내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매각을 병행 추진하여 정부 지분을 조기에 49% 이하로 축소
- 5. 통신장비 수급지원 및 기술 개발 추진**
- WTO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른 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통신사업자간 경쟁 확대로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 확대 예상
 - 국내 통신장비의 시장규모는 197~2001년까지 30조 4000억원으로 추정
- 시장규모, 국내 산업체의 기술 축적 및 경쟁력 확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 강구
 - 시장규모가 크고, 국내기술이 축적된 분야는 국산장비 개발을 적극 독려 및 지원
 - 시장규모가 작고, 기술축적이 미흡한 분야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독려
- 핵심부품의 전략적 개발 지원
 - 핵심부품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시스템과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
 - CDMA 단말기 등 세계시장에 서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의 핵심부품을 전략적으로 개발 지원
- 6. 정보통신 전문인력 수급대책 수립 추진**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창의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
- 정보통신 산업체의 자체 인력 양성기능 강화
 - 기간통신 사업계획서 심사시 인력양성계획이 우수한 신청자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
 - 중소 정보통신업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을 병행 추진
 -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 및 인력 교류
 - 신규인력 조기 확보를 위한 인턴제 확대 실시
-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인력양성 대책 마련·시행으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정보통신전문 대학원을 '98.3 월부터 개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양성
- 7. 정보통신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 국내유치활동 강화**
- 업체간 전략적 제휴 및 공동진출 추진
 - 해외진출시 통신서비스업체, 장비업체, SI업체, 공사업체간 공동진출
 - 완성품 위주의 대기업과 부분 품 위주의 중소기업간의 동반 진출 확대를 통해 시너지효과 추구
 - 외국 선진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와의 연합 콘소시엄 형태의 진출전략 병행 추진
-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강화 및 금융·보험지원 확대
- 정보통신분야 외국인기업 국내 유치 촉진
 - 정보통신전문단지 우선입주 등 각종 지원확대 추진
 - 통신시장 확대에 따라 수입규모가 커지고 있는 주요부품 등을 국내에서 생산, 국내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도 추진